



입찰공고 (공고번호 : 제KFE2026-79-1호)

본 공고문은 입찰자가 인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필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참여자는 이를 필히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첨부 4)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 참여자 보안사항 준수 의무 >

본 입찰(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자는 아래 사항을 엄숙히 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로 보안서약 동의 간주]**

1. 본 입찰(계약)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영업, 재직 중은 물론 폐업,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1]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COPYRIGHT ©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KFE). ALL RIGHTS RESERVED.



1. 입찰 개요

- ① 입찰건명: **MG 오일교체 및 유압시스템 제작 및 설치**
- ② 공고번호: **제KFE2026-79-1호**
- ③ 입찰방법: **전자입찰, 일반(총액), 규격가격동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 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우편 입찰 등 불허)
 - 기술(규격) 적격심사를 통과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 업체 낙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동가 입찰 시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한 낙찰자 결정)
- ④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
- 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⑥ 세부품명/수량/단위: 공고문에 첨부된 규격서, 기술시방서 등 참조
- ⑦ 사업금액(배정예산): **218,7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⑧ 추정가격: **198,85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
- ⑨ 기초금액(예정가격): 단일예가(비공개)
 ※ 위 사업금액(배정예산)과 상이할 수 있음
- ⑩ 납품기한: **2026.12.20. (최종 검수 완료일 기준)**
- ⑪ 분할납품: 불가
- ⑫ 인도조건: 연구원 지정장소 납품 (기술시방서 참조)
- ⑬ 납품장소: **기술시방서 참조**
- ⑭ 하자담보: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하자보증증권(계약금액의 10%) 발급)**

■ 입찰 주요 일정

입찰공고	설명회	서류제출	발표평가	가격입찰	개찰일시
'26.08.03. (월)	비대상	'26.08.04.(화), 09:00부터 '26.08.11.(화), 14:00까지	비대상	'26.08.04.(화), 09:00부터 '26.08.11.(화), 14:00까지	'26.08.11.(화), 15:00(예정)

2. 입찰 참가 자격

본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아래 공통, 개별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 |
|--------|--|
| 공
통 | <p>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처리 불가) 조달청(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이행한 자</p> <p>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p> <p>③ 입찰 마감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및 법정관리, 화의개시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없는 자</p> <p>④ 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 [입찰서 제출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p> |
| 개
별 | <p>⑤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비대상</p> <p>※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실시</p> <p>※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p>※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관련 세부 사항은 상기 법률에 의함</p> |

3. 입찰 일정 및 장소

- ① 입찰방법: **전자입찰**
- ② 규격(기술)·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8.04.(화), 09:00**
- ③ 규격(기술)·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11.(화), 14:00**
- ④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개찰 ※ 2026.08.11.(화), 15:00(예정)**
-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시 유의사항

- ◆ 사업금액(배정예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일체를 포함한 가격임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 낙찰자(계약자)는 계약, 하자 이행과 관련된 보증서(총 계약금액의 10% / 입찰유의서 제5조(입찰보증금)에 명시된 방식과 기관 발급분에 한함) 제출과 인지세 연대 납부(제조, 제작, 공사에 한함) 의무를 가지며, 해당 비용을 고려하여 입찰(투찰)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 ◇ 본 입찰의 사업금액(배정예산)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 ◆ 본 입찰은 단일예정가격이 적용되며, 기준가격 및 예정가격은 공개하지 않음

4. 제출서류

- ①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제출(e-발주시스템)**
- ② 제출 시작일시: **2026.08.04.(화), 09:00**
- ③ 제출 마감일시: **2026.08.11.(화), 14:00**
- ④ 유의사항: 제출 서류 일체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메인화면 ⇒ "e-고객센터" ⇒ "이용안내의" 해당 문서를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정상 송신 확인 필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검토 결과 및 지정 방식에 따라 서류 추가 제출 및 보완 요청 가능)

4. 제출서류 (계속)

- ⑤ 제출사항: 아래 문서를 수정 불가능한 PDF 파일 형태로 제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 제출사항 세부 내역 ※ 각 1부 제출

1)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및 관련 증빙 일체 단일 파일 제출) ※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 내용 기술심사 진행계획서(첨부 5) 참조 ※ 기술심사평가표-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순서에 따라 작성 ※ 파일 크기(용량) 문제로 전자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입찰담당자 문의	필수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첨부 4)	필수
3)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첨부 5)	필수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필수
5)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분), 사용인감계(사용인감 활용 시)	해당 시
6)	입찰마감일 현재 유효한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필수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창업기업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	해당 시
8)	연구원 퇴직자(정규직 이상) 고용 여부 확인서	해당 시
9)	기타 자격증 사본	해당 시
※ 인감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의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5. 낙찰자 결정 방법

- ① **기술적격자(평가점수 평균 75점 이상)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낙찰**
- ②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
- ③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④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한국 핵융합에너지연구원 결정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 ⑤ **기술평가 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개하며, 세부 평가 방법 및 기준은 기술심사 진행계획서(첨부 5) 참조**

6. 입찰보증금

-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 마감일시까지 입찰유의서 제5조(입찰보증금)에 명시된 방식으로 납부(발급)되어야 하며, 현금 납부 방법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별도 문의
- ③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체)
- ④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의거 지체 없이 정해진 보증금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요청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함.
- ⑤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함에도 납부 의무를 해태·불이행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채권 추심 가능**

7. 기타사항

-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전까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② 본 입찰 진행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클린신문고를 통해 신고 요망
 [주소: <https://www.kfe.re.kr/report/step1?mid=a10307010000&reportType=clean>]
- ③ **특정모델 지정 시 호환성이 보장되는 동등사양 이상 조건으로 제안 가능**



주 소: (34133)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홈페이지: <http://www.kfe.re.kr>
전화번호: +82)042-879-6326

< 관련 문의 >

[입찰 관련] 구매자산팀 김정호 Tel: 042-879-6326 / Mail: kjh1004@kfe.re.kr

[규격 관련] 규격서 “문의처” 참조

본 공고문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연구원 「계약구매요령」(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서 확인 가능)에 의함.

【첨부】 입찰관련 서류 일체 1부

- 첨부1 : 입찰유의서
- 첨부2 : 표준계약서 (참고 사항)
- 첨부3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첨부4 : 서약서
- 첨부5 : 기술심사 진행계획서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8월 3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7]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COPYRIGHT ©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KFE). ALL RIGHTS RESERVED.



첨부1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당 연구원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 연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3. 기타 입찰공고에 요구한 서류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8]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COPYRIGHT ©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KFE). ALL RIGHTS RESERVED.



주 소: (34133)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홈페이지: <http://www.kfe.re.kr>

전화번호: +82)042-879-6326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본 공고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체 가능

1.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마.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 서.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9]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COPYRIGHT ©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KFE). ALL RIGHTS RESERVED.



주 소: (34133)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홈페이지: <http://www.kfe.re.kr>
 전화번호: +82)042-879-6326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채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 연구원에 귀속된다.
- ③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일 것

- 제6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②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④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 ⑥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주 소: (34133)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홈페이지: <http://www.kfe.re.kr>
 전화번호: +82)042-879-6326

제8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서는 입찰 공고 등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당 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 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 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 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연구원이 정한 당해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1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 소: (34133)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홈페이지: <http://www.kfe.re.kr>
 전화번호: +82)042-879-6326

②낙찰자의 견본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본은 낙찰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당연구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견본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당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입찰의 연기, 재입찰, 재공고 입찰) ①당 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 연구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3회에 한하여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 가격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낙찰자가 계약 시 제작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확약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예정가격 이내의 차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 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당연구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연구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12]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COPYRIGHT ©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KFE). ALL RIGHTS RESERVED.



주 소: (34133)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홈페이지: <http://www.kfe.re.kr>
 전화번호: +82)042-879-6326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 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6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연대보증) 연구원은 계약자에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약한다.
- ②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의무를 완수하지 못할시 계약이행보증증권에 의한 계약 품목의 금전적 보상 이외에 작업지연 등 기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
- ③ 위 항의 작업지연 등 기타 모든 손해의 배상시 기준 금액은 공인된 손해산정 법인의 산정 금액에 따르기로 한다.

첨부 2 표준계약서

물품구매(제조)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A20 - 호	
계 약 명			
계 약 금 액			
계약 보증금		보증 금율	10%
지 체 상 금 율	1,000분의 0.75 (0.075% / 지체일수 당)		
계 약 기 간		하자 보증 기간	
기 타 사 항	○ 하자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0%로 정함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기술시방서 등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물품구매(제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대등의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붙임서류 : 1.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 1부 2. 기술시방서(규격서, 설계서, 제작사양서, 과업지시서 등) 1부 3.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 20 년 월 일			
발 주 자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상 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전 화 번 호 (042)879-6000
	대표자	오 영 국 (인)	사업자등록번호 752-82-00320
계 약 상 대 자	주 소		
	상 호		전 화 번 호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14]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COPYRIGHT ©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KFE). ALL RIGHTS RESERVED.

< 불 임 >

계약일반조건

제 1 조 (총칙)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일반조건을 상호간에 맺은 계약의 일부로 충분히 인지하며,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계약담당자: 발주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 ② 계약상대자: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③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제 3 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설계서, 기술시방서,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 ② 계약담당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 (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 5 조 (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 6 조 (채권의 양도) ①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 등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 8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킨다.

② 제1항은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기성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9 조 (수량조절)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당해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 10 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계약 전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의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 13 조 (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4 조 (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 15 조 (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 16 조 (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자가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 17 조 (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 18 조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 관계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와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물의 성격이나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한까지 이를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3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 20 조 (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21 조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

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 22 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를 준용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성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 23 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을 납품한 때에는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한 발주자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날의 다음날(翌翌日)부터 기산한다.
-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24 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5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3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이행 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 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물품제조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 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 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 26 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 28 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발주자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9 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특수조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특수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원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특수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

1. 대금 지불 조건

- ①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대가청구가 있을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정(예산관계 등)이 있을 시에는 그 조건(지불대금, 시기)을 조정할 수 있다.

대금 종류	지불 대금	대금 지불 조건
	(원)	
계	(원)	

※ 지불대금은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에 연구원 확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②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 및 구매비용 증가 등에 따른 모든 비용 증가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연구원은 제반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 ③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2. 제작품 제작

- ① 계약상대자는 구매품목이 아닌 제작품들에 대하여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도록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제작도면을 작성하는 동안 연구원의 제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며, 연구원과의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모든 제작품들이 납기 내에 납품되도록 한다.
- ③ 연구원은 제작도면 작성기간의 지연으로 인한 납품기간 지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제작을 위한 자재구매, 협력업체 선정 등과 같은 제작품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근거자료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제작기간 단축 및 구매비용 절감 등을 위한 지본자재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구입할 수 있다.
- ⑥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제반 표준사양을 준수하도록 한다.

3. 기존 상용제품 납품

- ① 상용으로 시판되는 제품들은 연구원이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연구원은 기술적인 요인 및 제품의 표준화 작업을 목적으로 특정 제품을 지목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품 납품 시 제품의 규격, 사양, 사용방법, 신호 입출력 등과 관련하여 연구원이 요구하는 제반 기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정 및 교정

- ① 제품 성능 및 품질검사 등과 관련해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정 및 교정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 ② 제반 설계변경이 요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근거자료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료 제출

- ① 계약상대자는 구매사양서 및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된 기술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를 정해진 기간 또는 필요에 의해 연구원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 ① 계약상대자는 기술제안서에 명시된 품질관리 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정해진 기간 및 요구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요구하는 품질관리에 대해 수용하여야 한다.
- ③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과 관련된 협력업체 및 제작업체 방문이 허용되어야 한다.

7. 회의소집

- ① 연구원은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한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의 요구가 있을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진척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8. 현장점검

- ①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활동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정사항이 발생 시에 계약상대자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당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연구원에 부정한 취업 제공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전자서명)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7]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COPYRIGHT ©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KFE). ALL RIGHTS RESERVED.

첨부 4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 약 서

당사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MG 오일교체 및 유압시스템 제작 및 설치”(제 KFE2026-79-1호) 기술(규격)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되었으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에서 결정한 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전자서명)

※ 입찰·규격서 제출로 전자서명 같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사업자만 제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MG 오일교체 및 유압시스템 제작 및 설치” 입찰 및 계약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인감증명서 및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확인)
- 계좌번호(업체 등록 및 대금 지급)
- 전화번호(핸드폰번호 포함)(입찰 및 계약 관리)

3. 보유 및 이용 기간: 영구 (계약서류 보존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관련 수집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찰 참여 및 계약 사무 제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전자서명)

※ 입찰·규격서 제출로 전자서명 같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8]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COPYRIGHT ©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KFE). ALL RIGHTS RESERVED.

첨부 5 기술심사 진행계획서

[1] 주지사항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반드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이 실시하는 기술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기술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구매부서에서는 기술심사 결과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개하되, 평가위원 인적 사항 등은 연구원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술심사

- 해당 연구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 기술심사 위원회는 입찰업체에서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기술심사 기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매부서 계약담당자에게 전달한다.

[3]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 평가 분야 및 평가 항목 순서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 기술 능력은 **아래의 항목에 대해 순서대로 작성하되, 직접 제작한 도면으로 제출한다.**
직접 제작한 도면 미 첨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가. 기술제안 내용

- 1) 구조 및 동작 설명
- 2) HPU 시스템 설계(상세도면 작성)
 - 가) 시스템 구성방안
 - 나) 구성요소의 상세 사양
 - 주요 구성품(펌프, 모터, 밸브류, 스위치류 등 모델명 포함)
 - 다) 조인트 부위 누유방지 방안
 - 라) HPU 모터 및 펌프의 교번운전 방안

나. 설계 및 기구물 배치

- 1) HPU 시스템 구조물 설치 도면
- 2) 배관 및 지지대 설치 도면
- 3) 시스템의 P&ID 도면

다. 일정 및 공정관리

- 1) 제작절차서 (현장제작과 외부제작 구분 정리)
- 2) 제작, 조립 설치 일정표
- 3) 검사 및 시험방법 제시
 - 장치 개별 시운전(HPU, 오일순환 시스템)
 - MG 시스템 종합시운전(MG 운전 포함)

기술심사 평가표

○ 기술심사 합격조건 :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 평균이 **75점**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분야	평가항목	가중치 (A)	평가등급(B)					점수 (A×B)
			5	4	3	2	1	
1. 기술능력 (70점)	기술제안내용	7						
	설계 및 기구물 배치	5						
	일정 및 공정관리	2						
2. 기술인력 보유 (5점)	관련 기술자	1						
3. 납품실적 (10점)	납품실적	2						
4. 관련인증서 (5점)	공장등록증 및 인증서	1						
5. 재무건전성 (10점)	신용평가	2						
평가점수 합계(100점 만점)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안)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기 준	비고
기술능력	기술제안내용 (35점)	1. 구조 및 동작설명 2. HPU 시스템 구성 요소의 사양 가. 전체 배관 구성 나. 주요 구성품(펌프, 모터, 밸브류, 스위치류 등) 3. 누유방지 방안 및 교번운전 방안	
설계능력	설계 및 기구물 배치 (25점)	1. HPU 시스템 구성 설계 (구조도, P&ID : 2D & 3D 도면)	
관리능력	일정 및 공정관리 (10점)	1. 제작절차서 2. 제작, 조립 설치 일정표 3. 검사 및 시험방법 제시	
기술인력 보유	관련기술자 (5점)	1. 제작 및 설치 경력 기술자: - 5년 이상, 3인 이상: 2점, 2인: 1점 2. 설계분야 경력 기술자 - 5년 이상, 3인 이상: 2점, 2인: 1점 3. 용접 경력 기술자(자격증 보유일 기준) - 10년 이상, 2인 이상: 1점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 필수	기술인력은 총 5점으로 한다
납품실적	납품실적 (10점)	1. 유사설비(발전기 제작, 유지관리) 납품실적 (최근 5년간) - 1억원 이상, 3건: 10점, 2건: 6점, 1건: 4점 ※ 계약서, 세금계산서, 실적증명서(공공계약에 한함) 제출 필수	납품실적은 총 10점 으로 한다
인증서	관련인증서 (5점)	1. 공장등록증 보유: 3점 3. 제작관련 인증서(ISO, UL, CE, 품질보증) 유무 - 2가지 이상: 2점 ※ 관련 인증서 사본 제출 필수	
재무 건전성	신용등급 (10점)	1.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기관에서 인증한 유효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 점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	10.0
AA+,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 AA-에 준하는 등급	4.8	9.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6	9.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4	8.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0	7.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8	7.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6	6.5
BB+,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3.4	6.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2	5.5
B+,B0,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3.0	5.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이하	2.0	4.5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가서를 제출할 때는 동 평가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업체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⑥ 컨소시엄 구성인 경우에는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